

용인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

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정 | 1996. 3. 1 | 규칙 제 10호 |
| 개정 | 1996. 7. 31 | 규칙 제 93호 |
| | 1998. 10. 17 | 규칙 제 141호(직 제규칙) |
| | 2001. 3. 16 | 규칙 제 260호 |
| | 2001. 7. 19 | 규칙 제 270호 |
| | 2002. 6. 26 | 규칙 제 314호 |
| | 2005. 10. 5 | 규칙 제 427호 |
| | 2007. 1. 31 | 규칙 제 531호 |
| | 2010. 12. 17 | 규칙 제 618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 |
| 일부 개정 | 2011. 7. 12 | 규칙 제 637호 |
| 일부 개정 | 2015. 5. 18 | 규칙 제 786호 |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문화상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5. 5. 18>

제2조(추천서류 등) ① 「용인시 문화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용인시문화상(이하 “문화상”이라 한다)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개정 2015. 5. 18>

1. 추천서 1부(별지 제1호서식)
2. 공적조서 1부(별지 제2호서식)
3. 이력서 1부(별지 제2호의2서식)
4. 공적 증명서류 1부(현품, 사진, 인쇄물, 스크랩, 그 밖에 공적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)
5. 재직증명서 1부(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)
6. 사진 2매(명함판)

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5. 5. 18>

[제목개정 2015. 5. 18]

제3조 삭제 <2015. 5. 18>

제4조 삭제 <2015. 5. 18>

제5조 삭제 <2015. 5. 18>

제6조(심사기준) 조례 제2조의 문화상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. <개정 1996. 7. 31, 2011. 7. 12, 2015. 5. 18>

1. 학술부문: 인문과학, 자연과학부문을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책자의 저술,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에 공헌한 사람
2. 문화부문: 금속, 공예 등 고유의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의 보존, 전승, 발전에 현저한 공헌한 사람
3. 예술부문: 문학, 공연, 음악, 미술, 사진 연예부문 등 예술전반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 및 창의적인 연구활동으로 훌륭한 작품의 발표에 공헌한 사람
4. 교육부문: 학교교육, 사회교육분야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
5. 지역사회봉사부문: 의료사업, 사회복지사업 등 각종 복지차원에서의 봉사 및 개발 사업 등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
6. 체육부문: 우수선수 지도양성, 체육연구의 저변확대, 국내의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한 사람
7. 관광부문: 관광여건 조성, 관광자원 개발, 관광사업의 지도·육성 등 관광 진흥에 기여한 업적이 인정되는 사람

제7조 삭제 <2015. 5. 18>

제8조(수상자에 대한 대우) 문화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사망 시 상당한 예의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. <개정 2015. 5. 18>

제9조 삭제 <2015. 5. 18>

제10조(기록보존)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, 공적내용,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공적조서 및 포상대장 등재 등에 대해서는 「용인시 포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15. 5. 18]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7. 3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10. 17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1. 3. 1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1. 7. 1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2. 6. 2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규칙 제427호>

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. 1. 31 규칙 제53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2. 17 규칙 제61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용인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문화관광업무”를 “문화예술업무”로 한다.

② 생략

부칙 <2011. 7. 12 규칙 제63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5. 18 규칙 제78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문 화 상 수 상 자 대 장

| 일련 번호 | 시상 일자 | 수 상 자 | | | | 공적개요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|------|----|
| | | 성 명 | 주 소 | 생년월일 | 성별 | | |
| | | (한자)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